대구예술대학교 논문발간에 관한 규정

(제정 2001.03.01.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수 연구.발전을 위한 논문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편집위원회 구성) 논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다음에 의하여 임명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교무처 담당 직원이 겸무한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논문 발간을 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논문발간을 위한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발간을 위한 종합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논문 게재 선정자에 관한 사항
3.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논문집 개선 및 정비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당)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8조 (예산) 논문 발간을 위한 예산은 총장의 결재하에 예산액을 산정하여 위원장이 집행한다.

제9조 (투고자격) ①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동일전공자 1인 이상과 함께 공동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우리 대학교의 외래강사도 게재할 수 있다.

③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논문 게재시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방법) ① 투고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로 한다.

② 투고 논문은 한글워드를 사용한 컴퓨터로 작성하여 원고 2부와 디스켓으로 제출하며, 300～400자 정도의 논문요지를 함께 첨부한다.

③ 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한다.

④ 외국인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도 논문요지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투고 논문의 표지) 투고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의 제명, 필자명, 직위, 전공, 주

소,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2조 (그림 등의 표시) 투고 논문에는 그림 및 난해한 문자 등을 가급적 피하고 그림 등이 필요할 때는 전사용지나 백색 모조지에 정교하게 작성하여 첨한다.

제13조 (참고문헌의 작성방법) 참고문헌은 (1)저자(필자)명 (2)논문명 (3)그 논문이 실린 원자료명(호수, 권수 표시) (4)발행기관(출판사), 출판년도의 순으로 게재한다. 동일 필자의 문헌을 복수 참고했을 때는 발행년도 순으로 게재한다.

제14조 (각주의 방법) 註(주)는 번호를 붙여 정리하며(예, 1), 2) 등), 脚註의 형식을 취한다.

제15조 (교정) 투고 논문의 교정은 필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 (원고) ① 접수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에게는 별쇄본 30부와 본지 3부를 증정한다.

제17조 (논문발행시기) 논문의 발행은 격년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시기는 연도초에 발행한다.

제18조 (기타) 기타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